

종합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25년 경상북도체육회 —

2025. 4.



□ 처분요구일람표

1. 퇴직급여 지급 기준 개선 필요 (통보)	1
2. 소송비용 회수액 미반납 (시정)	3
3.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 (시정)	5
4. 인사제도 등 운영 미흡 (통보)	7
5. 전국□□체육대회 유공자 시상금 지급 부적정 (시정)	10
6. 추가경정예산 편성 절차 미준수 (주의)	12
7. 지방보조금 정산절차 이행 소홀 (시정)	14
8. 공사계약 입찰공고 부적정 (주의)	16
9. 계약업무 추진 부적정 (주의)	18
10. 채용신체검사비 실비보상 부적정 (시정)	20
11. 초임급 책정 업무 소홀 (시정)	23
12. 경상북도□□□□□□ 직원 채용 평가서류 확인 소홀 (주의)	28

경 상 북 도

통 보

제 목 퇴직급여 지급 기준 개선 필요
소 관 청 경상북도체육회
관 계 부 서 ○○○○부
내 용

경상북도체육회에서는 「보수규정」에 따라 퇴직사유가 발생한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경상북도체육회 「보수규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르면 만 1년 이상 근무한 사무처장 및 직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근속 1년당 1개월분의 평균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사무처 운영 규정」 제65조 및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퇴직급여충당금은 근속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 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되어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경상북도체육회에서는 퇴직급여의 기준이 되는 퇴직자의 근로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발령일로부터 기산하여(중간 정산자는 정산시점부터) 퇴직일 또는 근로계약이 해지 될 때까지로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경상북도체육회 「보수규정」 제14조에서는 퇴직자의 근속년수 6개월 미만은 6개월, 6개월 이상은 1년, 재직 중 사망한 자는 잔여월을 1년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규정¹⁾하고 있다.

이번 감사기간 중 경상북도체육회의 퇴직금 지급 내역(2022년 ~ 2024년)을 점검한 결과 퇴직근로자 7명에 대한 퇴직금을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실근무기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13,356천원²⁾이 과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이 근속기간으로 인정되고 있어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체육회장은

근로자의 실근무기간을 기준으로 근속년수를 계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통보)

- 1) 대한체육회에서는 「직원연봉규정」 제26조에 근속년수는 발령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 또는 사망한 날까지의 연수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상북도체육회의 산정방식은 과다하게 규정되어 있음
 2) 퇴직급여 조정 지급 내역(2022년~2024년)

(단위 : 원)

연번	직위	성명	지급일	입사일 (중간정산 기산일)	퇴직일	급여총액 (1년)	기준급여 (A)	실근무 년수 (B)	조정 근무년수 (C)	실근무년수 기준퇴직급여 (D=A*B)	퇴직급여 지급액 (E=A*C)	차액
계	7명									374,302,930	387,659,630	△13,356,700
1	-	-	22.8.1.	11.1.1.	22.7.22.	47,347,900	3,945,658	11년6월	12년	45,375,060	47,347,890	△1,972,830
2	-	-	23.8.28.	14.10.1.	23.8.16.	48,030,642	4,002,554	8년10월	9월	35,355,890	36,002,980	△647,090
3	-	-	24.1.23.	07.7.2.	24.1.1.	91,016,910	7,584,743	16년6월	17년	125,148,260	128,940,600	△3,792,340
4	-	-	24.8.12.	21.6.21.	24.7.31.	33,234,470	2,769,530	3년1월	3년6월	8,539,410	9,693,370	△1,153,960
5	-	-	24.7.9.	07.1.2.	24.6.30.	100,334,559	8,361,213	17년6월	18년	146,321,230	150,501,830	△4,180,600
6	-	-	24.7.9.	22.4.11.	24.6.30.	33,164,470	2,763,706	2년2월	2년6월	5,988,020	6,909,260	△921,240
7	-	-	24.4.11.	21.6.21.	24.3.31.	33,054,810	2,754,568	2년9월	3년	7,575,060	8,263,700	△688,640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소송비용 회수액 미반납
소 관 청	경상북도체육회
관 계 부 서	○○○○부
내 용	

경상북도체육회에서는 행정운영비를 보조금으로 교부받아 집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제1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집행 잔액과 지방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지방보조사업의 수익금을 반납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기준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을 즉시 반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10조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보조금으로 교부받은 행정운영비로 소송비용을 집행하고, 승소하여 소송비용을 회수한 경우에는 그 해당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그런데 경상북도체육회에서는 2024. 3. 8. AAA이 제기한 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송비용(2,322,561원)을 회수하고서도 보조금교부자(道)에게 해당 금액을 반납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반납되어야 할 보조금(2,322,561원)이 반납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체육회장은

도비보조금으로 집행한 소송비용에 대한 회수액 2,322,561원은 경상북도에 반납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체육회
관 계 부 서	○○○○부, ○○○○부
내 용	

경상북도체육회에서는 보조금 반납액,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등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다.

경상북도체육회 「사무처 운영 규정」 제65조에 따르면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지방계약법」, 「지방재정법」,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 「경상북도재무회계규칙」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르면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는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제1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지방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지방보조사업의 수익금을 반납받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보조사업자는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을 즉시 반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을 때에는 입출금 내역을 명확히 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정산보고 후 해당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그런데 아래 [표] 와 같이 지방보조금으로 교부받은 회원 종목단체운영비, 우수선수 영입비 등이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반납되어 있는데도 2025. 3. 21. 감사일 현재까지 보조금교부자(道)에게 반납하지 않고 있었다.

[표] 세입세출외현금에 보관되어 있는 미반납 보조금

(단위 : 원)

연번	입금일	금액	내용	비고(재원)
계	5건	11,444,760		
1	2019.2.28.	10,000,000	○○시청○○○팀 선수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금 반납	도비
2	2019.6.17.	72,200	경상북도체육회 직원교육비 정산액	도비
3	2020.3.13.	1,137,070	2019년 ○○협회 사무국 운영비 반납	도비
4	2020.7.31.	40,690	경상북도체육회 직원교육비 정산액	도비
5	2020.7.31.	194,800	경상북도체육회 직원교육비 정산액	도비

그 결과 세입세출외현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반납되어야 할 보조금(11,444,760원)이 반납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체육회장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도비 보조금 11,444,760원은 경상북도에 반납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통 보

제 목 인사제도 등 운영 미흡
소 관 청 경상북도체육회
관 계 부 서 ○○○○부
내 용

경상북도체육회에서는 「사무처 운영 규정」, 「인사관리 규정」, 「보수규정」 등에 따라 직원의 승진 및 보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1. 인사예고제 운영 미흡

경상북도체육회 「인사관리 규정」 제1조에 따르면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를 위하여 인사관리 규정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수립하고 있는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승진·전보 등 인사를 실시하기 전에 인사운영 방향·기준을 사전에 공지하고, 승진·전보 등 임용기준을 변경할 때에는 소속 직원이 알 수 있게 공문시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예고하여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인사요인(결원), 인사발령일 등 소속 직원의 승진, 이동 등 주요 인사계획을 포함하여 인사운용계획을 사전에 공지하여 인사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경상북도체육회에서는 직원 승진과 관련된 인사방향 및 기준, 인사요인(결원) 등이 포함된 인사예고제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인사요인(결원) 등에 따른 승진대상 직원들의 예측가능성이 제한되고 있다.

2. 종합근무평정 이의제도 미운영

「공공기관 운영혁신을 위한 공공기관 비정상적 인사관행 개선방안」(국민권익위원회 의결 2014. 4. 7., 제2014-101호)에 따르면 근무성적평정결과 등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가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의신청 및 기타 인사고충에 대한 창구를 운영하도록 권고하였다.

그런데 경상북도체육회 「인사규정」에서는 근무평정 결과는 평정대상 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 본인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처리 방법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평정결과에 이의제기 및 처리방법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3. 징계의 효력에 관한 사항

경상북도체육회 「사무처 운영 규정」 제87조 및 「인사관리 규정」 제35조에 따르면 징계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보수규정」 제2조에 따르면 보수는 기본급과 기타 제수당을 합산한 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제71조에서는 징계의 효력으로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하고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삭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상북도체육회에서는 강등 및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의 보수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여 「인사관리 규정」 등 보수 규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그런데 경상북도체육회에서는 「인사관리 규정」 제35조 및 별표 인사 제7호에 강등과 정직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에도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 학비, 주택수당의 경우 수당액의 2/3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지방공무원법」과 상이하게 보수 규정을 운영하여 강등 및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이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에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체육회장은

인사방향 등이 포함된 인사예고제를 운영하시고, 종합근무평정 이의제기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시기 바라며, 강등·정직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에는 보수 전액을 삭감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전국□□체육대회 유공자 시상금 지급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체육회
관 계 부 서	○○○○부
내 용	

경상북도체육회에서는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선수 및 지도자들에게 대하여 시상하고 있다.

경상북도체육회 「전국체육대회 유공자 시상규정」 제1조 및 제2조, 제4조에 따르면 경상북도 대표로 전국체육대회(동계·하계)에 참가하여 입상한 선수의 지도자에게는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단체(수구, 컬링 등 12개 종목) 종목의 금메달을 획득한 지도자에게는 10,000천 원, 은메달을 획득한 지도자에게는 5,000천 원, 동메달을 획득한 지도자에게는 2,500천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되, 참가팀이 5개 이하인 경우는 지급금액의 25%를 지급하며, 참가팀이 6개 이상~10개 이하인 경우는 지급금액의 5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상북도체육회에서는 전국□□체육대회 입상 지도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때에는 입상 종목의 참가팀을 확인하여 10개팀 이하일 경우 지급금액의 50%를 지급하여야 했다.

그런데 경상북도체육회에서는 아래 [표] 와 같이 2023. 3. 21. 전국□□체

육대회 □□경기는 참가팀이 10개팀 이하이므로 입상 지도자에게는 성과금 지급액의 50%를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지도자인 AAA, BBB, CCC 총 3명에게 성과금 전액인 17,500천 원을 지급하였다.

[표] 2023년 전국□□체육대회 □□팀 입상 지도자 성과금 지급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입상내역					지급자		실지금액 (A)	정당액 (B)	과지금액 (C=A-B)
	메달	종별	세부종목	소속	참가팀	직위	성명			
합계								17,500	8,750	8,750
1	은	여일부	단체전	-	10팀	코치	AAA	5,000	2,500	2,500
2	은	여고부	단체전	-	7팀	코치		5,000	2,500	2,500
3	동	여중부	단체전	-	8팀	코치		2,500	1,250	1,250
4	동	남고부	단체전	-	8팀	코치	BBB	2,500	1,250	1,250
5	동	남중부	단체전	-	7팀	코치	CCC	2,500	1,250	1,250

그 결과 입상 지도자에게 성과금 8,750,000원 과다 지급되어 보조금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체육회장은

부적정하게 지급된 2023년 전국동계체육대회 지도자 성과금 8,750,000원은 회수하여 경상북도에 반납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추가경정예산 편성 절차 미준수
소 관 청 경상북도체육회
관 계 부 서 ○○○○부
내 용

경상북도체육회에서는 2024년 경상북도체육회 사업비(도비 보조금)를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다.

경상북도체육회 「사무처 운영 규정」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르면 예산이 성립된 후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편성 절차의 경우에는 본예산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하면서 예산안은 이사회의 의결로써 성립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경상북도체육회 「정관」 제18조에서는 이사회의 기능으로 예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면서 해당 이사회의 기능을 회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경상북도체육회에서는 2024년 도비 보조금의 예산변경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본예산 편성 절차에 준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했다.

그런데 경상북도체육회에서는 2023년 제5차 이사회 회의(2023. 12. 28.)에서

일반회계 예산의 추가지원 및 삭감으로 인한 예산변경 사항을 회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고, 그 의결사항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회장의 결재만으로 2024. 9. 26.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항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예산 승인을 요청하였다.

[표] 2024년 체육진흥사업비 예산변경(2024. 10. 2. 경북도 ○○과 승인)

(단위 : 천원)

연 번	사업명	집행내용			비 고
		본예산	증감액	추경예산	
합 계	증 906,734천원, 감 906,734천원	7,932,210	0	7,932,210	
1	전국체육대회참가	421,800	782,334	1,204,134	
2	경기력향상지원비	2,139,570	△406,734	1,732,836	
3	경상북도체육회직장운동부운영	4,818,640	△500,000	4,318,640	
4	전문체육도지사기대회	30,000	50,000	80,000	
5	도회원종목단체육성지원	522,200	74,400	596,600	

그 결과 「사무처 운영 규정」 및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인 예산 변경사항을 회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부당하게 의결하였고, 회장의 결재를 받아 예산 변경 승인 요청을 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체육회장은

앞으로 「사무처 운영 규정」 및 「정관」에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지방보조금 정산절차 이행 소홀
소 관 청	경상북도체육회
관 계 부 서	○○○○부, ○○○○부, ○○○○부, ○○○○부
내 용	

경상북도체육회에서는 2023년 경상북도로부터 보조금 22,533,800천 원을 교부받아 25개 사업(전국 동·하계 체육대회 등)을 추진하였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7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상북도체육회에서는 2023년 경상북도로부터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수행한 25개 사업의 실적보고서를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인 2024. 2월말까지 경상북도로 제출하여야 했다.

그런데 경상북도체육회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2023년 경상북도 보조금 25개 사업 중 16개 사업의 실적보고서를 2~4개월(평균 123일) 지연하여 제출하였고,

특히, 2023년 체고체육대회개최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2024. 7월 보조금 수령자(○○○○고등학교)가 경상북도체육회로 반납하여 발생한 집행 잔액 5,032천

원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2025. 3. 21. 감사일 현재까지 경상북도에 제출하지 않고 있었다.

[표] 2023년 경상북도 보조금 정산 현황(23년 체육회 결산기준)

(단위 : 원)

연번	사업명	집행내용			정산일자	초과일수
		예산액 (최종)	집행액	집행잔액		
합계	25개 사업	22,533,800,000	22,157,091,191	376,708,809		평균 123일
1	-	5,402,500,000	5,371,218,942	31,281,058	2024.07.15	137
2	-	240,000,000	240,000,000	0	2024.06.03	95
3	-	463,900,000	458,602,872	5,297,128	2024.06.03	95
4	-	41,480,000	21,573,480	19,906,520	2024.02.26	-
5	-	628,700,000	628,239,377	460,623	2023.12.15	-
6	-	5,113,040,000	5,109,269,682	3,770,318	2024.02.23	-
7	-	50,000,000	34,275,080	15,724,920	2024.06.20	112
8	-	412,530,000	412,522,560	7,440	2023.11.30	-
9	-	427,080,000	405,098,120	21,981,880	2024.06.26	118
10	-	490,200,000	469,272,780	20,927,220	2024.06.09	101
11	-	206,500,000	206,200,000	300,000	2024.06.18	110
12	-	549,600,000	528,320,900	21,279,100	2024.07.15	137
13	-	262,500,000	237,005,100	25,494,900	2024.06.18	110
14	-	280,000,000	230,500,000	49,500,000	2024.06.18	110
15	-	97,000,000	96,972,000	28,000	2024.02.15	-
16	-	64,000,000	64,000,000	0	2024.06.18	110
17	-	199,000,000	198,824,064	175,936	2024.06.13	105
18	-	158,970,000	158,959,660	10,340	2024.04.09	40
19	-	80,000,000	80,000,000	0	2024.02.07	-
20	-	20,000,000	20,000,000	0	정산 미보고	386 ³⁾
21	-	13,000,000	12,749,700	250,300	2024.06.17	109
22	-	2,323,000,000	2,319,982,028	3,017,972	2024.06.14	106
23	-	700,000,000	542,823,120	157,176,880	2023.11.30	-
24	-	92,470,000	92,470,000	0	2024.02.13	-
25	-	4,218,330,000	4,218,211,726	118,274	2023.02.23	-

* 2024. 7. 28. 보조금수령자(경북체고)에서 5,032천원 반납하여 집행잔액 발생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체육회장은

- ① 정산 보고하지 않고 있는 체고체육대회개최지원 사업은 조속한 시일 내 정산 보고 및 반납 등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② 앞으로 「지방보조금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정해진 기일 내에 보조금 정산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3) 감사 종료일(2025. 3. 21.) 기준으로 산정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공사계약 입찰공고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체육회
관 계 부 서	○○○○부
내 용	

경상북도체육회에서는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경상북도체육회 「사무처 운영 규정」 제65조에 따르면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 「경상북도재무회계규칙」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 3. 28.) 제1장 입찰 및 계약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가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금지해야 할 사항으로 현장설명 참가자에 한하여 투찰이 가능하도록 제한한 사례(단, 300억 이상⁴⁾ 공사 입찰 시는 현장설명 참가자만이 입찰에 참여 가능)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하도급과 관련하여 계약 상대방이 숙지하여야 할 사항으로 해당 계약에 있어서 하도급이 가능하지 여부,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사항

4)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서는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을 입찰에 참가토록 규정하고 있음

등을 포함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상북도체육회에서는 300억 원 미만의 공사입찰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 참석 여부에 따라 입찰 참가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되고, 하도급 가능 여부 등도 포함하여 공사입찰 공고문에 기재하였어야 했다.

그런데 경상북도체육회에서는 2025. 2. 25. 경상북도○○○○ 건립공사(토목, 건축공사, 9,498,049,000원)를 입찰공고하면서 현장설명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고, 하도급 관련 사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한 채 공고하였다.

따라서 입찰 참가 희망업체들의 입찰 참가 기회가 부당하게 제한되었고, 하도급 관련사항이 명확하게 공고되지 아니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체육회장은

앞으로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부당하게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입찰 공고사항을 분명히 하여 계약 분쟁 가능성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계약업무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체육회
관 계 부 서	○○○○부
내 용	

경상북도체육회에서는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경상북도체육회 「사무처 운영 규정」 제65조에 따르면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7호, 2024. 2. 14.)에 따르면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공사 및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 1인 견적에 따른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추정가격 2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물품의 경우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상북도체육회에서는 해당연도 예산에 단일사업으로 책정되거나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 예산 집행과정에서 단일사업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합 발주하여 계약을 추진하여야 하고, 통합 발주로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런데 경상북도체육회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2024. 2. 16. “(대한) 2023 학교운동부 지원 사업” 추진에 따라 학교운동부에 훈련용 기구 구입 계약을 추진 하면서 같은 종목의 물품의 경우에는 통합하여 발주하고, 1인 수의견적 가능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데도 같은 종목인 수영물품을 3개 학교별로 분할하여 동일한 도급업체인 “AAA” 와 각각 계약 체결하였다.

[표] 2023 학교운동부 지원 1인 수의 계약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계약명	종목	계약업체	계약일자	계약금액 (부가세포함)
	계					37,614
1	(대한) 2023 학교운동부 지원(이월)	학교운동부 지원사업 훈련용기구 구입(□□□□초)	수영	AAA	2024.2.16.	12,307
2	(대한) 2023 학교운동부 지원(이월)	학교운동부 지원사업 훈련용기구 구입(□□초)	수영	AAA	2024.2.16.	12,307
3	(대한) 2023 학교운동부 지원(이월)	학교운동부 지원사업 훈련용기구 구입(□□□□초)	수영	AAA	2024.2.16.	13,000

그 결과 통합발주를 통한 예산 지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없었고, 특정업체가 수의계약의 혜택을 얻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체육회장은

앞으로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유사·동일한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여 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채용신체검사비 실비보상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체육회
관 계 부 서	○○○○부, ○○○○부
내 용	

경상북도체육회에서는 지방공무원임용기준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신규 직원에 대한 채용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9조에 따르면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경상북도체육회 「사무처 운영 규정」 제19조에 따르면 응시자의 채용 시 건강진단, 채용 신체검사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실비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상북도체육회에서는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에게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하게 하여 응시자의 부담으로 채용신체검사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발급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하여야 한다.

그런데 경상북도체육회에서는 2021년부터 2025. 3. 21. 감사일 현재까지 [붙임]과 같이 해당기간 동안 자비로 채용신체검사서를 발급 받은 총 168명에 대하여 검사비용을 보상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채용신체검사서 발급으로 발생한 금전적 비용이 구직자에게 전가되었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체육회장은

채용신체검사비를 보상하지 않은 총 168명에 대한 실비보상 계획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붙임]

채용응시자 채용신체검사서 제출 및 비용 보상 현황

- 개인정보 포함으로 비공개 처리 -

※ 경상북도체육회 제출 자료 재구성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초임급 책정 업무 소홀
소 관 청 경상북도체육회
관 계 부 서 ○○○○부
내 용

경상북도체육회에서는 「보수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신규 채용 직원에 대하여 초임급 확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경상북도체육회 「보수규정」 제6조에 따르면 신규채용자의 초임급 확정 시 해당직무와 동일한 경력이나 유사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표 1]과 같이 경력 환산율을 적용하여 환산된 호봉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표 1] 경력환산표

경력 별	내 용	합산율
갑 경력	1.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경력 2. 군경력(무관후보생 경력 제외) 3.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4. 체육관련 공공기관의 회원종목단체 또는 시도체육회(시·군·구체육회 포함)경력	100%
을 경력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 감사대상이외의 주식회사 등의 기업체 경력 2. 사립학교 교직원 경력	70%
병 경력	1.임시직 공무원 경력(사도 및 대한체육회 경노무고용원 국가기관 임시직 등) 2.기타 해당업무기관의 규모·성격과 근무경력의 내용정도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력	50%

※ 경상북도체육회 「보수규정」 [별표1] 경력합산율표

따라서 경상북도체육회에서는 초임급 확정 전에 신규 채용자에 대하여 해당 직무와 관련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도록 안내하여 신규직원이 제출

한 경력 중 해당직무와 동일하거나 유사경력이 있는지 검토하여야 하고, 반영할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경력과 관련되는 대상기관에 담당업무, 경력기간, 직위 등 경력 인정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전력(前歷) 조회를 실시하는 등 발급기관의 확인 절차를 거쳐 초임급에 산입하여야 한다.

그런데 경상북도체육회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총 5명의 신규직원에 대한 경력을 초임급에 산입하면서 신규직원이 제출한 경력증명서에 대해서 대상기관에 전력조회를 실시하지 않고, 직원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인정하여 초임급에 산입하였고, 특히 AAA 등 2명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중 초임급 산정의 근거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자료를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도 못 하였다.

[표 2] 신규채용 직원 초임급 호봉획정 시 경력인정 현황

연도	성명	채용 직종	경력사항		경력증명서 제출 여부	전력조회 여부	비고
			대상기관	인정경력기간			
2022	AAA	사무	□□□	'20.8.3.~'20.12.31 '21.7.1~'22.4.8	-	부	
2023	BBB	사무	□□□	'20.8.3.~'20.12.31 21.7.1~22.4.8	-	부	
			□□□	'19.7.2~'19.10.1	-	부	
			□□□	'19.2.25~'19.7.1	-	부	
2024	CCC	사무	□□□	'16.5.23~'18.5.22	여	부	
2024	DDD	사무	□□□	'23.3.2.~'23.12.31	여	부	
2024	EEE	사무	□□□	'14.03.03~'21.02.28	여	부	
			□□□	'22.10.4.~'23.4.30. '23.10.04~'24.7.31	여	부	

그 결과 경력이 과장되었거나 허위일 경우 초임급 책정이 잘못되어 급여가 부적정하게 지급될 우려가 있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체육회장은

전력조회를 실시하지 않은 김예림 등 5명에 대하여 대상기관에 전력조회를 실시하여 기 확정된 초임급 책정의 적정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경상북도□□□□□□ 직원 채용 평가 서류 확인 소홀
소 관 청 경상북도체육회
관 계 부 서 ○○○○부
내 용

경상북도체육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실시한 ‘2023년 지역스포츠과학센터 운영자 선정 공모사업’에 신규 운영자로 선정되어 2023. 12. 26. 부터 “경상북도□□□□□□”(이하 ‘□□’라 한다.) 를 운영하고 있고,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의 「지역 스포츠과학거점 운영사업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공개 채용하고 있다.

운영지침 “스포츠과학센터 직원 자격요건 및 채용방법”에 따르면 선발기준은 직책별 합산점수를 산출⁵⁾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서류전형 평가기준에서 센터장·선임연구·연구원의 경우 운영지침에 열거된 국가 자격증⁶⁾에 한하여 국가 자격 점수를 산출하여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연구원의 경우 스포츠관련 근무

5) < 직책별 합산점수 산출 >

구분	점수 산출	만점
센터장	[평가기준 연구실적 등 심사에 따른 서류점수(최대 700점)×40%]+[(붙임1에 따른 발표점수)×7×40%]+[(붙임1에 따른 면접점수)×7×20%]	700
선임연구원	[평가기준 연구실적 등 심사에 따른 서류점수(최대 800점)×40%]+[(붙임1에 따른 발표점수)×8×40%]+[(붙임1에 따른 면접점수)×8×20%]	800
연구원	[평가기준 연구실적 등 심사에 따른 서류점수(최대 500점)×50%]+[(붙임1에 따른 면접점수)×5×50%]	500

6) - 센터장/선임연구원
· 건강운동관리사(구 생활체육지도자 1급) : 100점, 전문스포츠지도사 1급(구 경기지도자 1급) : 100점
· 연구원 * 전문스포츠지도사는 종목별로 점수 부여
· 건강운동관리사(구 생활체육지도자 1급) : 100점, 전문스포츠지도사 1급 : 100점,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 50점

경력 점수⁷⁾를 실적점수로 부여하여 서류전형 점수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상북도체육회에서는 □□ 직원 채용을 위한 서류전형 시 서류전형 심사기준 및 선발기준에 따라 심사위원들이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하고, 심사위원들의 평가점수를 정확하게 반영하여 합격자 선정과정에 오류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기준과 다르게 평가한 채점표를 발견한 때에는 해당 심사위원에게 정정 요청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경상북도체육회에서는 2023년도 □□ 직원 채용 시 당시 연구원 응시자였던 AAA의 근무경력 점수를 서류전형 점수에 반영하면서 AAA이 제출한 경력증명서가 경력증명 대상기관인 “○○○”에서 발급받은 경력증명서가 아닌, 센터 채용공고 시 (예시)로 제시한 경력증명서 서식에 AAA 본인이 기재하고 서명한 경력증명서이고, 스포츠 관련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안동시체육회”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인데도 근무경력 점수에 반영⁸⁾하였다.

그리고 2024년 센터 직원 채용 시 선임연구원 응시자였던 BBB의 국가자격 점수를 산출하여 반영하면서도 「운영지침」에서 열거하고 있지 않은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에 대해서 「운영지침」시달 기관인 ○○○⁹⁾의 확인 등의 절차도 없이 “구 생활체육지도자 1급” 자격증에 해당한다고 자의적으로 해석¹⁰⁾하여 국가자격 점수를 반영¹¹⁾하였다.

7)

근무경력 점수	200	6~12개월	1년 이상	2년 이상	3년 이상
		50점	100점	150점	200점
* 스포츠관련 근무경력(근무경력 총합, 증명서 제출에 한정)					

8) 감사기간(2025.3.17. ~ 2025.3.21.) 중 감사관이 요청하여 ○○○가 발급한 □□□ 건강운동관리사 근무한 경력증명서를 제출받음

9) 현재 ○○○으로 명칭 변경

10)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은 구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이 없어지고 대체된 자격증이나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 1급이 구 생활체육지도자 2급에 해당되어 「운영지침」에서 열거하고 있는 자격증에 해당하지 않고, 건강운동관리사(구 생활체육지도자 1급)만 해당

11) 감사기간 동안 오류가 있었던 자격증 점수를 제외하고 평가점수를 재산정한 결과 합격자 선정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그 결과 운영지침을 위반하여 경력증명서가 인정되어 채용심사 점수에 반영되는 등 채용 업무가 소홀히 처리되었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체육회장은

앞으로 「지역 스포츠과학거점 운영사업 운영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채용심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